

심사보고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
----------	----

2022. 10. 21.(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0월 17일

-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①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설립 예정)¹⁾ 출연금 : 1,936백만원

○ 출연목적

-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도단위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

출연내역	예정금액	재원	비고
합 계	1,936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856백만원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비	1,080백만원		

○ 기대효과

- 공공성·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
-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

②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 160백만원

○ 출연목적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08. 2월)된 기관으로,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특수법인

- 최근 청주·충주의료원 간호사 이직(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코로나 19 치료 전담병원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을 위하여 간호대학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 신규 간호인력 확보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

○ 출연 예정금액 : 160백만원

○ 출연내역 :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 기대효과 :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운영 등 미충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여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법적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
- 본 계획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한 바,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적절히 제출되었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제8조(출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①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설립 예정)

-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 왔으나, 위탁계약의 연속성 담보의 어려움에 의한 고용관계의 불안, 개개 시설의 분절적 운영에 따른 체계적·균질적 서비스 제공 한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을 제정하였음.
- 충북도에서는 올해 3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따른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로 기본재산(100백만원),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액(980백만원)과 도비매칭비용(480백만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였고, 9월「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11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예정하고 있음.
- 본 출연계획안은 올해 9월15일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사전통보(가내시)’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1,936백만원)를 출연하려는 것임.
- 출연금 1,936백만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며,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액(968백만원)과 도비매칭비용(968백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민간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 단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기관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설립초기에 일부 혼선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 운영 중인 타시도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벤치마킹 및 지역 전문가 및 복지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아 해당 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 본 출연계획안은 청주·충주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및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을 위하여 신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충북인재양성재단에 공공간호사 장학금(160백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임.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부족한 도 내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본 사업은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에 대한 수요급증과 정부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의 확대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북도 내 대학 간호학과 졸업생 중 15% 정도(20년 기준)만이 도 내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고, 또한 도내 공공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수가 정원 대비 19%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충청북도 내 의료원 간호인력 부족현황>

(단위: 명/ '22.1.31. 기준)

구 분	계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정 원	471	278	193
현 원	383 (81.3%)	217 (78%)	166 (86%)
과 부 족	△88	△61	△27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을 통한 2년 의무근무는 도내 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2년도 지원대상 목표인원 이었던 40명이 지난 5월31일 1차 모집 시 27명, 10월12일 2차 모집 시 13명 합격으로 충족된 점에 비춰볼 때, 본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본 2023년 출연계획에서도 2022년도 출연계획에서와 동일한 40명을 목표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만약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대학별 공공간호사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대학명	계	1차합격(5.31)			2차합격(10.12)		
		소계	청주	충주	소계	청주	충주
합 계	40	27	19 (남2)	8 (남1)	13	5	8
가톨릭꽃동네대학교	5	4	4		1	1	
청주대학교	2	1	1 (남)		1	1	
충청대학교	5	4	4 (남1)		1		1
충북보건과학대학교	6	6	5	1			
한국교통대학교	2	2	2				
세명대학교	1				1		1
대원대학교	3				3		3
유원대학교	1	1	1				
강동대학교	1	1		1			
극동대학교	1	1		1 (남)			
영월-세경대학교*	3	3		3			
문경-문경대학교*	9	4	2	2	5	3	2
안동-가톨릭상지대학교*	1				1		1

* 충북 외 타 지역대학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86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5일
제안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복지국 소관 >

(단위:백만원)

연번	출연기관	소관부서	출연내역	예정금액	비고
	2개 기관			2,096	
1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과	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사업비	1,936	
2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160	

①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설립 예정) 출연금 : 1,936백만원

○ 출연목적

-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 부문 역할 확대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

출연내역	예정금액	재원	비고
합 계	1,936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856백만원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비	1,080백만원		

○ 기대효과

- 공공성·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
-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

②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 160백만원

○ 출연목적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설립('08. 2월)된 기관으로,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청주·충주의료원 간호사 이직(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을 위하여 간호대학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 신규 간호인력 확보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

○ 출연 예정금액 : 160백만원

○ 출연내역 :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 기대효과

-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운영 등 미충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여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기타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복지보훈팀	서동경	우영미	박선경	3012

기관명	(설립 예정)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장) : 미정 ○ 설립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북대동,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규모 : 3개팀 20명 - 기관성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 - 주된사업 : 민간 제공기관 지원, 사회서비스 연구, 긴급·틈새돌봄지원 등 						
출연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936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출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본재산	100	-	-				
사회서비스원 설치비	500	-	-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960	1,936	1,936	968	968		
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 ○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사업비 지원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도감독부서인견(중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 시군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사업계획서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해당없음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노인 및 1인 가구,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로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향상을 위한 공공역할을 강화하고, 시군이 보유한 자원과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 필요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 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2022년 3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내역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B-C)
합계	-	-	1,936	1,936	376
기본재산	100				△100
사회서비스원 설치비	500				△500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960		1,936	1,936	976

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자원분담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1-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 설립개요

- 설립형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
- 설립시기 : 2022년 11월 설립 예정
- 주사무소 :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북대동,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기본재산 : 도비 1억원 출연
- 예산규모 : 운영비 年 19억원(국비 50%, 도비 50%), 설치비 5억원(1회, 국비 100%)
- 조 직 : 3개팀 20명
- 사업구성
 -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등 유사돌봄서비스 연계
 -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 중복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

□ 세부 추진방안(기능별)

시 군 격 차 해 소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사업 수탁 운영

- 법인 부족, 민간수탁 기피 등으로 위탁추진에 난항을 겪는 시군 지원
- 취약계층 학대피해보호기관 등 공적책임이 높은 위탁기관 수탁 운영

② 차별화된 긴급돌봄 및 유사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 차별화된 긴급돌봄(코로나19, 갑작스런 질병·사고, 요양등급 판정 전 돌봄 등)
-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운영 등을 통한 인프라 취약 시군 지원
- 유사서비스(맞춤형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화

서 비 스 품 질 향 상

③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국정과제)

- (교육) 채용·근로계약·근로환경 등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직무교육
- (컨설팅)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지원
- (안전관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소규모 수선 등

④ 중복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국정과제)

- 사회서비스별 표준운영모델 개발·보급(중복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제시)
-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방안 연구 등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1,936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 필요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출연개요

- 사업명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출연액 : 1,936백만원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사업비
- 인건비 856백만원, 운영·사업비 1,080백만원
- 출연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산출기초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분담비율
합계	1,936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856	3,567천원×20명×12월=856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비	1,080	90,000천원×12월=1,08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 기대효과

- 공공성·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
-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제한 및 구심적 역할 부재 우려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따른 국비 확보 차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시·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공공의료팀	곽홍근	이경아	이경호	220-3152

기관명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 : 김영환 ○ 일반현황 : (소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주요사업) 장학사업, 인재양성사업 					
출자·출연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6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재원별		
			계	도비출연금	인재양성재단	의료원
계	320,000	320,000	320,000	160,000	32,000	128,000
※ 재정부담 비율 : 도 50%, 인재양성재단 10%, 의료원 40%						
출자·출연필요성	○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익적 기능 강화 및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 제8조(출연) 도지사·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지도감독부서인견(중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 ○ 청주·충주의료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이 정원대비 부족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수급 방안이 필요함. ○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학과생에게 생활장학금 지원으로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함. ○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장학금 지원에 소요되는 출연금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인원 및 조직현황 등) 3. 출연사업계획서 					

2-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경영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치 등 명확히 설정, 설정과정에 전 구성원 참여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청주·충주의료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한 의무복무(2년)로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수행 기여
- 이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우수한 간호인력을 발굴하여 공공간호사를 육성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

3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내역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상 지원	160,000	-	160,000	-	160,000

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2-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화번호 : 043-224-0221 홈페이지 : www.chrdf.or.kr			
주요연혁	- '08. 2월 설립등기 - '17. 8월 국민교육발전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 '22. 7월 제5대 김영환 이사장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2.8.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명		5명		1명			
인원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김○○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이사	윤○○	충청북도교육감		"			
	"	이○○	청주시장		"			
	"	조○○	충주시장		"			
	"	김○○	제천시장		"			
	"	최○○	보은군수		"			
	"	황○○	옥천군수		"			
	"	정○○	영동군수		"			
	"	이○○	증평군수		"			
	"	송○○	진천군수		"			
	"	송○○	괴산군수		"			
	"	조○○	음성군수		"			
	"	김○○	단양군수		"			
	"	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	김○○	충청북도 행정국장		"			
	"	이○○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			
	"	홍○○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재임기간			
	"	이○○	충북대학교 교수		22.04.03. ~ 24.04.02.			
	"	오○○	대신정기화물 회장		22.04.19. ~ 24.04.18.			
	"	이○○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22.04.19. ~ 24.04.18.			
	"	임○○	前 충북여약사회 회장		22.05.14. ~ 24.05.13.			
	"	권○○	신한은행충북본부장		22.06.22. ~ 24.06.21.			
	"	조○○	청주병원 원장		21.03.08. ~ 23.03.07.			
	"	이○○	前 대성중학교 교장		21.03.08. ~ 23.03.07.			
	"	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1.04.29. ~ 23.04.28.			
"	이○○	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장		22.06.22. ~ 24.06.21.				
"	정○○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원장		22.06.22. ~ 24.06.21.				
감사	조○○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		재임기간				
"	변○○	한빛회계법인사무소공인회계사		20.09.06. ~ 22.09.06.				
주요기능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및 각종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80,0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 간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81,569	
		예산액	7,241	6,461		6,308	부채	46
		지자체 지원액	650	686		710	자본	81,523
2021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066			2,073		993	

②-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출연	16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재학생 인재 양성
-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여

□ 출연개요

- 사업명 :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총사업비 : 320백만원(출연금 160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 지원대상 : 간호학과 4학년 생활장학금 지원(1인 800만원/년, 40명)
- 출연근거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 산출기초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분담비율
운영재원 합계	320	8,000천원×40명 = 320백만원	100%
도 출연금	160	8,000천원×40명×50% = 160백만원	50%
충북인재양성재단	32	8,000천원×40명×10% = 32백만원	10%
청주·충주의료원	128	8,000천원×40명×40% = 128백만원	40%

□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간호사를 양성하여 도내 공공의료 인력자원으로 활용 가능
-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양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미승인 시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난함에 따라 간호사 충원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임.

지방재정법 및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8조(출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